

시립 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99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12일
보건복지위원회

☐ 심사경과

I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3099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 출 일 : 2025년 8월 11일
- 라. 회 부 일 : 2025년 8월 12일

☐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실장 윤종장)

II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고덕양로원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6년3월5일부터 수탁하여 운영중이나 재계약이 2026년3월4일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의 적합성,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(2025년 제5차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

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고덕양로원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
○ 추진 필요성

- 노인양로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-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인권보호, 자기결정, 자립생활, 사례관리, 비밀보장, 기록 및 공개, 사회통합, 전문서비스와 효율성, 부당청구 금지, 영리목적의 알선행위 등의 금지 등의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준수와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.
- 따라서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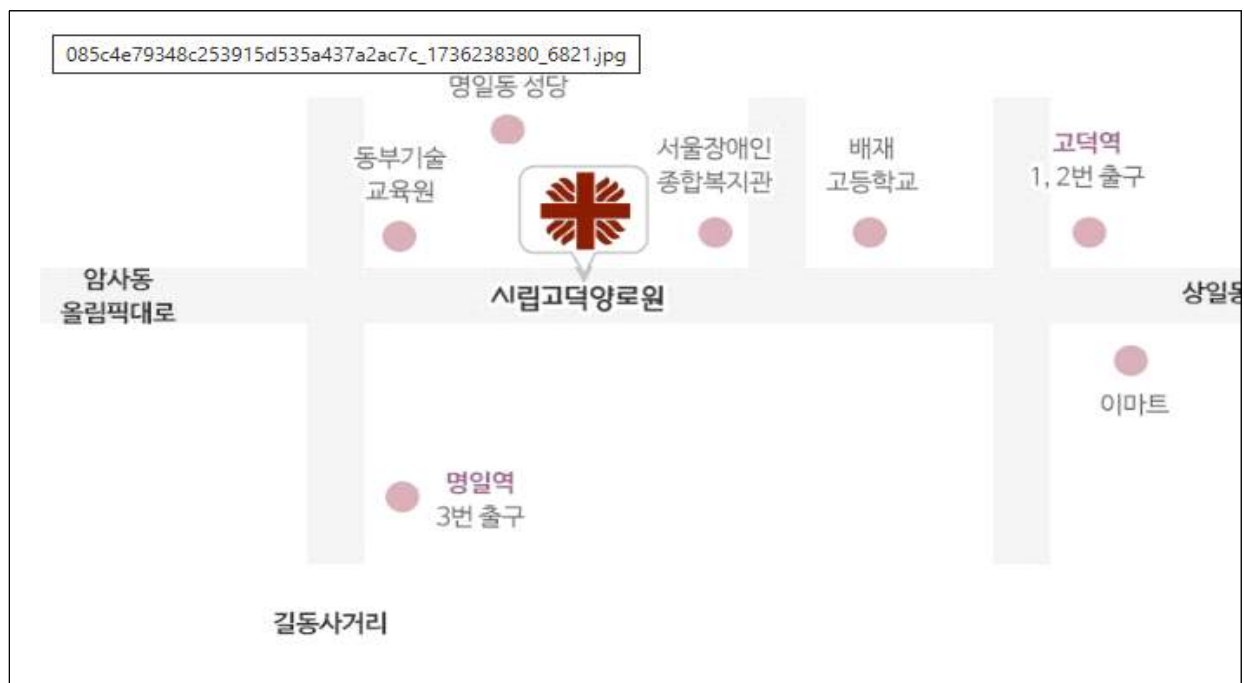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○ 시설보호대상 노인 입소보호

- 입소노인의 인권보호, 건강관리, 급식위생, 안전관리
- 상담 · 사회교육, 기능회복, 복리후생
- 시립고덕양로원의 관리, 회계 규정 준수 등 운영 전반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)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- 시설규모 : 대지 21,804 m^2 , 건물 3,573 m^2 / 본관, 별관
- 준공일자 : 1982.12.17.
- 이용대상 : 거주지,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1985.3.5. ~ 1990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- 2차 : 1990.3.5. ~ 1995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- 3차 : 1995.3.5. ~ 1998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- 4차 : 1998.3.5. ~ 2001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5차 : 2001.3.5. ~ 2004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 - 6차 : 2004.3.5. ~ 2007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 - 7차 : 2007.3.5. ~ 2010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 - 8차 : 2010.3.5. ~ 2013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 - 9차 : 2013.3.5. ~ 2016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 - 10차 : 2016.3.5. ~ 2021.3.4.(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)
 - 11차 : 2021.3.5. ~ 2026.3.4.(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)
- 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 (2026.3.5. ~ 2031.3.4.)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시설형 재위탁
- 사. 소요예산 : 2,275백만원('25년 기준)
- 인건비 2,017백만원, 운영비 105백만원, 사업비153백만원
-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I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1항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
-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의1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6조
-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. 제4조의

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‘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’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. 3. 4. 만료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절차¹⁾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〈민간위탁 재위탁·재계약〉

재위탁 · 재계약 (「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(23.6.)」)

- 재위탁 :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
- 재계약 :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1회만 가능)

- 본 사무는 위탁 기간의 지도·감독 결과,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1회 후 재위탁을 추진함

1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3. "위탁사무"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4. "재위탁"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○ 시립고덕양로원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- 개관일자 : 1969.6.4.
- 시설규모 : 대지 21,804㎡, 건물 3,573㎡ / 본관, 별관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
 -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·사회교육·기능회복·재가노인·복리후생·지역복지사업
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위탁기간 : 5년 (2026.3.5. ~ 2031.3.4.)
- 선정방식 : 재위탁
- 소요예산 : 2,275,563천원(2025년)

2 동의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

1.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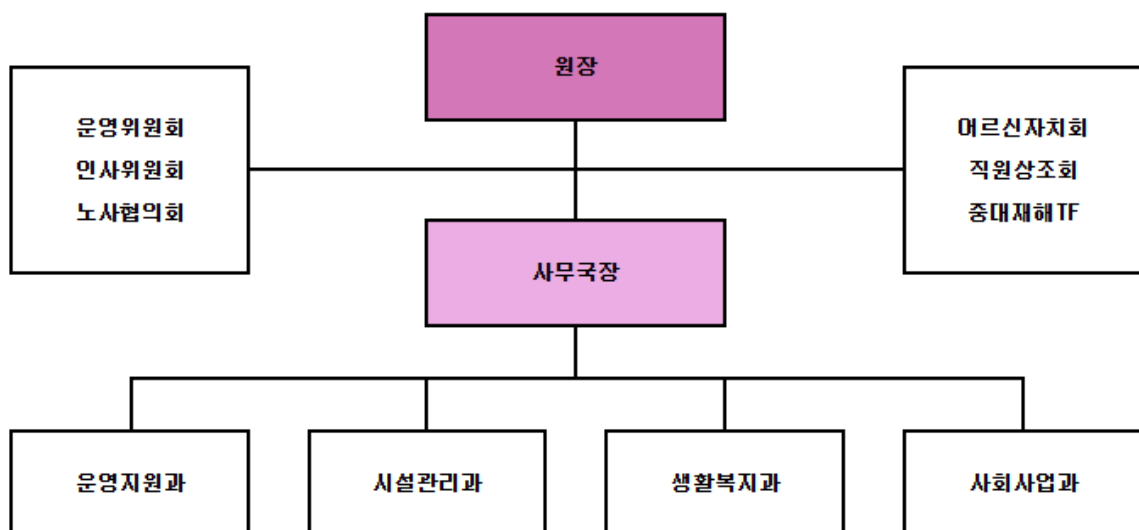
- 시립고덕양로원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임.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의 수탁 기간이 만료(2021. 3. 4.)된 후 재계약 기간(2026. 3. 4.)도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5년간 (2026. 1. 20.~ 2031. 1. 19.) 재위탁하고자 함.

□ 민간위탁 추진 경위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1차	5년 (1985.3.5.~1990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-	
2차	5년 (1990.3.5.~1995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3차	3년 (1995.3.5.~1998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4차	3년 (1998.3.5.~2001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5차	3년 (2001.3.5.~2004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6차	3년 (2004.3.5.~2007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7차	3년 (2007.3.5.~2010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8차	3년 (2010.3.5.~2013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9차	3년 (2013.3.5.~2016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10차	5년 (2016.3.5.~2021.3.4.)	(사복)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재위탁	
11차	5년 (2021.3.5.~2026.3.4.)	(사복)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재계약	

□ 조직현황

○ 조직현황 : 1국 4과, 총 35명



□ 인력현황

(단위:명)

인원	원장	사무국장	사회복지사	간호사	축탁의	물리치료사	영양사	사무원	생활지도원	조리원	위생원	관리원	시설기사	운전기사
35	1	1	2	2	1	1	1	1	14	5	2	2	1	1

- 종사자 인력 구성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등)의 기준을 기본안으로 채용됨.

□ 입소율(정원/현원 현황)

(매년 12월 말 기준)

구분	정원	2022년		2023년		2024년	
		수급자	실비	수급자	실비	수급자	실비
입소자(명)	104	63	20	65	25	67	23
입소율(%)		80%		87%		87%	

※ 입소율=현원/정원*100%

□ 입소자 현황

(2025.4월 말 기준)

- 수급자 및 실비, 연령, 남녀 현황

구분	총계	인원(수)		연령별 비율				
		수급자	실비	65세 이상	70대	80대	90대	100세 이상
소계	88	61	27	1	12	42	29	4
남	28	16	12	0	5	18	5	0
여	60	45	15	1	7	24	24	4

※ 평균연령 87.4세(남85세, 여88.6세), 최고령(102세), 최연소(69세)

- 입소기간별 현황

(기준일 : 2025.6월)

구분	계	1-4년	5-9년	10-14년	15-19년	20년 이상
계	88	48	15	11	8	6
남	28	18	2	3	1	4
여	60	30	13	8	7	2

※ 평균입소기간 6.9년(남6.9년, 여7년), 최장입소(29년)

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교부액	집행액	집행률
2022년	1,803,835	1,779,467	98.6%
2023년	1,915,592	1,863,121	97.3%
2024년	2,162,312	2,143,962	99.2%
2025년 (6월 말 기준)	1,103,369	898,741	81.5%

-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7% 이상을 유지하여 보조금 지원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. 최근 3년 중 2024년의 집행률이 99.2%로 가장 높았으며,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교부액대비 집행률이 약 81.5%로, 연말까지 추가 교부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예산 세부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과목		2025년	구성비율
세입예산	계		2,809,541	100%
	위탁금	민간위탁금	2,275,563	81
		민간위탁사업비	-	-
	보조금	국비보조금	123,954	4.4
		시비보조금	96,656	3.4
		구비보조금	8,500	0.3
	사업수입	시설이용료 수입	-	-
	사업외수입	실비입소비용수입	150,965	5.4
		법인전입금	20,000	0.7
		후원금	25,000	0.9
		이월금	67,141	2.4
		기타잡수입	41,762	1.5
세출예산	계		2,809,541	100%
	인건비		2,041,837	72.7
	운영비		659,084	23.5
	사업비		45,880	1.6
	사업외지출		4,590	0.2
	예비비		1,000	-
	지난년도지출		-	-
	반환금		19,908	0.7
	일반관리비		37,242	1.3
	이윤		-	-
	부가가치세		-	-

- 2025년 세입과 세출 예산은 2,809,541천 원으로 편성되었음.
 - 세입예산 중 위탁금이 2,275,563천 원으로 전체의 81%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국비보조금 4.4%, 시비보조금 3.4%, 실비입소비용수입 5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. 후원금, 법인전입금, 기타잡수입 등은 각각 1% 미만의 비중으로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

확인됨.

-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가 2,041,837천 원으로 72.7%를 차지하며 가장 큰 항목임을 보여주었으며, 운영비가 23.5%, 사업비 1.6%, 반환금 0.7% 순으로 나타남.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인 것으로 확인 됨.

□ 주요 운영실적

사업분류	세부사업명			계획	
			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
지역사회연계사업	사진공모전(인생, 그리고 향기를 담다)			1/200	5,000
	겨우살이축제			1/40	4,000
	부활·성탄 나눔행사			2/200	1,000
	후원자·자원봉사자의 날			1/30	1,000
네트워크사업	네트워크사업(우리함께해요)			2/12	200
특화사업	인생의 책장에마지막 추억 한 장을더하다‘추억한스폰+’			8/10	1,000
	.마지막 동행			발생시	500
연중행사	명절행사 및 나눔행사	명절행사		2/110	2,000
		신년인사		1/73	0
	행복드림 (오! 해피데이)	어버이날행사		1/55	1,000
		생신잔치		12/72	1,900
		백수연		1/1	
		성탄 및 송년 잔치		1/55	1,000
사회적지지망 형성 사업	가족간담회			1/10	300
일상생활지원사업	취향맞춤서비스	장보기지원		24/360	0
		은행업무지원		120/120	0
		금전출납관리		발생시	0
	때때고광내고	배변관리		365/ 2,920	0
		목욕지원		52/416	0
		이미용서비스		36/396	0
심리정서지원사업	호스피스			발생시	0
	실크닉	봄나들이		1/16	500
		가을 나들이		1/16	500
		문화체험 활동		2/10	300
	소확행	전통시장 나들이		4/20	400
		힐링타임		2/10	300
	신나는나의인생	cat's cinema		10/200	300
		노래교실		30/450	2,500
		원내공연관람		5/250	0

사업분류	세부사업명			계획	
			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
		가요청백전		1/55	800
	신앙 및영적지원 사업	천주교	십자가의 길	횃수:7 인원:49	0
			봉성체	횃수:10 인원:100	0
			성지순례	횃수:2 인원:60	3,000
		개신교	성지순례	횃수:1 인원:15	300
		불교	성지순례	횃수:1 인원8	200
	장기입원자관리			12/132	0
	생활실 이동			2/10	0
어르신 간담회 및 자치회			4/240	0	
교육지원사업	어르신 인권교육			2/110	0
	어르신 응급대처교육			1/60	0
	어르신 치매예방교육			1/60	0
	어르신 보건교육			3/180	200
	어르신 구강교육			1/60	0
	어르신 낙상예방교육			4/240	0
기능회복지원사업	늘푸른 나의 인생	미술놀이	30/300	2,650	
		포크댄스	30/540	2,500	
		원예활동	16/160	2,880	
		건강스마일	30/360	200	
	치매예방사업			1/50	0
	물리치료 서비스			75/3,375	1,180
	재활지원사업	기능평가	2/146	0	
		보장구	4/160		
		조사			
축탁의진료			24/312	0	
의료·간호 서비스 사업	외래진료			10/730	120
	입·퇴원관리			1/11	0
	간호처치			13/949	0
	응급지원			1/4	60
	투약관리			365/26,645	0
	건강검진사업			1/60	0
	예방관리사업			3/193	0
	약물관리사업			109/7,567	2,200
	건강관리사업			24/1,009	0
급식 운영관리	.식자재납품업체 계약			1회	350
	급식운영			1,095/76,650	0
	특별식관리			1,376/28,845	0
	급식실위생관리			732/2,197	0
	행사관리			14/1,230	0
	영양·위생 교육			26/153	0
	‘잔반줄이기’ 캠페인			377/36,661	0
위생관리	공용시설 위생관리			228/228	0
	세탁물관리			228/3,000	0
시설안전 및 유지관리	시설유지보수			561/1,122	1,900
	법정안전점검 및 청소			18/18	3,943
	안전교육			3/210	0
	장비관리			15/15	0

사업분류	세부사업명	계획	
	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
	차량운행 및 관리	616/616	7,880
	비품관리	41/82	1,500

- 2025년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부터 지역사회연계사업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2. 운영평가 결과

- 2021년과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²⁾ 결과에 따르면 “A등급”으로 “적정” 양로시설로 평가됨.

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

<2024년 양로시설 평가>

○ 평가영역: 5개 영역 37개 지표

- 시설 및 환경(3개 지표), 재정 및 조직운영(13개 지표), 프로그램 및 서비스(12개지표), 생활인의 권리(5개지표), 시설운영전반(4개 지표)

○ 평가결과

연도	평균 등급	평가영역				
		시설 및 환경	재정 및 조직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생활인의 권리	시설운영 전반
2024	A	A	A	A	A	A

<2021년 양로시설 평가>

○ 평가영역: 6개 영역 45개 지표

- 시설 및 환경(5개지표), 재정 및 조직운영(13개지표), 프로그램 및

2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 ① 조례 제18 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서비스(12개지표), 생활인의 권리(7개지표), 지역사회 관계(5개지표), 시설운영전반(3개지표)

○ 평가결과

연도	평균 등급	평가영역					
		시설 및 환경	재정 및 조직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생활인 의 권리	지역사 회관계	시설운영 전반
2021	A	B	B	A	A	A	A

※ 등급 구분 기준 : A등급 90점이상,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,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,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, F등급 60점미만

- 2021년 평가에서는 시설 및 환경, 재정 및 조직운영이 80점 이상 “B등급”으로 평가되었으나. 2024년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90점이상 “A등급”으로 운영 전반에 높은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가 상향되었음이 확인됨.

□ 지도감독결과

연도	점검결과	조치결과
2024년	- 사업외수입(실비입소비용, 잡수입) 잔액 발생, 적정 지출 요청	시정조치 완료
2023년	- 후원금 사용결과 양식 준수 - 프로그램 관리 철저	시정조치 완료
2022년	- 시설 운영규정 등 현행 법령 반영하여 개정 필요 -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- 물품관리자 및 출납원 지정 보완	시정조치 완료

- 최근 3년간 실시된 종사자·이용인 관리, 회계관리, 시설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외 수입 잔액 발생에 따른 적정지출 요청, 후원금 사용결과 양식 준수, 프로그램 관리 철저 등이 지적되었으나 시정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됨.

3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

- 시립고덕양로원의 사무는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운영을 위한 사무이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 제1호³⁾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함
-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 장기적·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에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
 - 시설보호대상 노인 등의 입소, 돌봄 보호,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, 운영, 입소 이용 노인 및 시설의 안전 관리 등 노인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로서, 인력·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 방식이 적합함.

3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위탁사무명	유 형	現수탁법인	위탁예정기간	심의 결과
시립고덕양로원 관리 및 운영	재위탁	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5년 이내 (’26.01.20~’31.01.19)	적정

4 종합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사무를 연장하고 신규 또는 기존 법인에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, 공공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, 예산 절감,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확보,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지속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의안에 대한 위탁 사무는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추후 수탁기관을 운영할 법인 선정 시 기관 운영관리, 조직역량, 사업역량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골든빌리지 조성에 따른 양로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본 운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수탁 법인을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원안가결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고덕양로원의 위탁기간이 2026.3.4. 자로 만료 됨에 따라
- 나. 노인 복지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명 : 시립고덕양로원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및 같은 법 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 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시립고덕양로원은 저소득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복지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 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시설보호대상 노인의 입소 및 보호
-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-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'시'와 '법인'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- 규 모 : 대지 21,804 m^2 , 건물 3,573 m^2 / 본관, 별관
- 주요시설 : 생활실, 상담실, 물리치료실, 강당, 사무실 등

마. 민간위탁 기간 : 5년(2026.3.5.~2031.3.4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,275백만원('25년 기준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,017백만원, 운영비 105백만원, 사업비153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5년 제5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및 같은 법 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
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고독대응과 김미연 (☎ 2133-7181)